##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32

발의연월일: 2025. 4. 15.

발 의 자: 박덕흠 • 이헌승 • 김민전

장동혁 • 박정훈 • 박상웅

정동만 · 김성원 · 고동진

성일종 · 송석준 · 박정하

서천호 · 김소희 · 윤영석

박수민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기존 양식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양식의 활성화· 첨단화를 도모하는 스마트양식이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 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.

이와 관련, 국내에서도 스마트양식 관련 R&D 사업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, 스마트양식은 법 률상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정책 추진에 한 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스마트양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, 스마트양식지원센터의 지정 및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·보급 촉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61조의2·제61조의3 신설 등).

###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"스마트양식"이란 생산성·품질 향상과 경영비·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양식을 말한다. 제6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스마트양식 육성에 관한 사항

제59조 제목 중 "규모화"를 "규모화 및 스마트화"로 하고, 같은 조 본 문 중 "확대"를 "확대 및 스마트화 지원 등"으로 한다.

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1조의2(스마트양식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「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 관"이라 한다) 중 스마트양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 마트양식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하여 스마트양식 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

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- 3.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가 그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, 지정 요건,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,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1조의3(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·보급 촉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스마트양식 관련 기자재의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  - 1. 스마트양식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사업
  - 2. 스마트양식기자재의 규격화 및 표준화 사업
  - 3. 스마트양식기자재에 대한 검증 및 인증 사업
  - 4. 스마트양식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
  - ② 그 밖에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·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·도지사"를 "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5.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1의2. "스마트양식"이란 생산성
	·품질 향상과 경영비·노동
	비 절감 등을 위하여 정보통
	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
	양식을 말한다.
2. ~ 13. (생 략)	2. ~ 13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) ①	제6조(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7의2. 스마트양식 육성에 관한
	<u>사항</u>
8.・9. (생 략)	8.•9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59조(양식업의 <u>규모화</u> 지원) 국	제59조(양식업의 <u>규모화 및 스마</u>
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	<u>트화</u> 지원)
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	
업자 간 협업경영과 양식업에	
대한 투자의 촉진 등 양식업의	
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	확대 및 스

·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의 협업경영은 제외한다.

<신 설>

마트화 지원	<u>등</u>

제61조의2(스마트양식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 중스마트양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양식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하여 스마트양식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
<신 설>

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- 2.
  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

   경우
- 3.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 가 그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, 지정 요건,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 차,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1조의3(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·보급 촉진) ① 해양수산 부장관은 스마트양식 관련 기 자재의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  - 1. 스마트양식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사업
  - 2. 스마트양식기자재의 규격화 및 표준화 사업
  - 3. 스마트양식기자재에 대한 검증 및 인증 사업
  - 4. 스마트양식기자재에 대한 사

제75조(청문) 시·도지사 및 시장 제75조(청문) 해양수산부장관, 시 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 <신 설>

후관리 및	안전관리시스템	구
축 사업		
<u>국 가입</u>		

② 그 밖에 스마트양식기자재 의 이용・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·도지사-----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의 취소